

2018년도 소방공무원(국가, 지방) 경력경쟁채용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장소 등 공고

2018년도 소방공무원(국가·지방) 경력경쟁 채용시험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중앙소방학교장

I. 인·적성검사

1. 검사일자 : 2018. 5. 15.(화) ~ 5. 18.(금)

※ 개인별 인·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18. 5. 11.(금))에 공고 예정

2. 검사장소 : 중앙소방학교 301강의실(본관)

3. 검사대상 : 체력시험 합격자

4. 검사방법 : 응시자 집합 인·적성 검사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5. 응시자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1부)

* 응시표 출력 : 2018. 5. 11.(금) 14:00 이후

- 출력방법 : 원서접수(<http://119gosi.kr>)사이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 인·적성검사 등록 시 신체검사서 제출

◇ 인·적성검사 당일 미제출자는 최종 인·적성검사 종료일 18:00까지 제출(도착분까지 인정)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18.6.1.(금) 18:00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주의사항>

◇ 중앙소방학교 지정 종합병원에서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붙임4 참고)

◇ 제출서식은 반드시 <붙임 3>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제출(공무원 신체검사서 불인정)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 압인 또는 계인 처리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 '17. 5. 14. 이후 발행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만 유효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

II. 면접시험

1. 시험일자 : 2018. 6. 7.(목) ~ 6. 15.(금)
※ 면접시험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 '18. 5. 11.(금)에 공고 예정
2. 시험등록 : 중앙소방학교 301강의실(본관)
3. 시험대상 : 체력시험 합격자
4. 평가방법 : 1단계 집단면접, 2단계 개별면접(블라인드 면접)
5.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6. 합격자 공고 : 최종 합격자 공고와 병행 발표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채용시험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연락처 : 041-550-0961~6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우편번호: 31068

◆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주)에니아소프트
- 연락처 : 043-219-1332

- 붙임 : 1. 중앙소방학교 약도 및 시험장 안내 1부.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2-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3.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4. 소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1부(별첨). 끝.

중앙소방학교 약도 및 시험장 안내

□ 찾아오시는 길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중앙소방학교



♠ 교통정보 (소요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하차장소	교통	이용방법
천안버스터미널	택시	택시 승강장 이용(약 15분 소요)
	버스	버스(약 35분 소요)
천안역	택시	택시 승강장 이용(약 15분 소요)
	버스	버스(약 20분 소요)
천안아산역	택시	택시 승강장 이용(약 30분 소요)

□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장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2-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합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 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 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 3>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5cm×4.5cm)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 명	생 년 월 일

검 사 내 용

신 장			체 중	kg
	cm		혈 압	
맨눈시력	좌: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우:			우: ()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흡기질환	
간 질 환			신경질환	
소 화 기 질 환			피부질환	
순 환 기 질 환			정신질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input type="checkbox"/> 합 격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합 격 여 부	<input type="checkbox"/> 불 합 격	
	<input type="checkbox"/>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